

속표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주 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	---

[토 론 문]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7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7
3) 황 남 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45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 공지사항	49
-----------------	----

프로그램

1부

사회 :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 주제발표 :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토 론 자 :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3) 참관자 질의 / 응답

4) 총 마무리 발언 : 정 순 돌 교수

[주제발표]

노인 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

정 순 돌 교 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소장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연구소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이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운용위원장
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사
한국노인복지학회 부회장
과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편집위원
(사) 나눔인터내셔널 감사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제11차 인구포럼 등에서 노인연령에 대한 재정정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경제, 건강, 사회적 관점에서 재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촉발된 논의는 2019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점화되고 있다. 또한 2월 21일 대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진료비 할인혜택 연령을 상향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1,500원 진료의 외래 정액제 대상자를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연 231만명의 혜택대상자가 감소하여 의료재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2019)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에서 2067년 46.5%로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0년이 되면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노인부양비 역시 2017년에는 36.7명이지만, 2067년에는 120.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심각한 부양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초고령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예측하는 96.2명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이 부양인구가 100명이 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연령을 상향시키자는 논의는 사회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가장 심각한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시작 연령을 늦추면 연금재정부담이 완화되어 정부의 재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양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빨리 노인의 연령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동의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처럼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없던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어떻게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과 관련하여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노인연령을 상향했을 때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들¹⁾

일반적으로 ‘노인’은 연대기적 개념에 의해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되어 왔으나 법령상 65세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74세 이하의 노인을 전기노인, 75세 이상을 후기노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학자들마다 노인에 대한 구분은 다르기도 하다. Atchley(1987)는 노인을 젊은 노인(young-old, 65-74세), 중간노인(middle-old, 75-84tp), 고령노인(the old-old, 85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Orimo et al., 2006; 정순돌, 2016). 또한 각 나라마다 노인연령기준은 문화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67세, 아프리카는 50세 등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노인의 연령기준이 높는데 이는 선진국의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WHO, 2000).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자는 논의는 현재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연령에 관한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은퇴와 같은 사회적 제도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노인 연령기준은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우대제중 노인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 5월 처음 실시 할 때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게 50%를 할인해 주었으나 1982년 1월 만 65세로 확대실시 되었고, 1984년에는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또한 1991년 시작한 노령수당의 경우는 초기 만 70세 이상 대상에서 1997년 만 65세로 확대 실시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미국혁명이전의 백인노인들은 재산소유, 가족 내 어른, 지역사회통제, 무역 정치, 종교에 유력한 입장을 지닌 권위자로 노년기는 신이 내린 축복의 시기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서 노인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지식을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게 하였고, 은퇴하는 노인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사회에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개인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인을 3세대(third age)와 4세대(fourth age) 노인으로 구분하는데(Gilleard & Higgs, 2000), 의존적이고 노쇠하며 죽음을 앞둔 노인을 4세대로 그렇지 않은 노인을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이 제안했던 노인의 연령기준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부분의 논의는 정순돌(2016). 노인연령,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11차 인구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수정 및 업데이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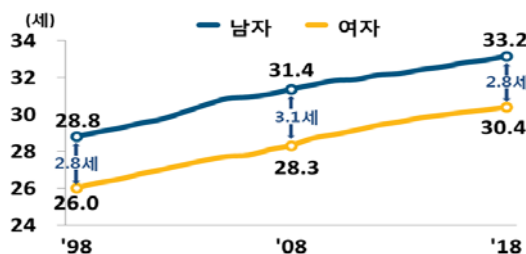
1. Settersten(2003)의 노인연령기준

Settersten(2003)은 노인의 연령을 통계학적 연령규범, 적정연령규범,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 등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계학적 연령규범

Settersten(2003)은 사람들이 언제 정규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삶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나이에 대한 인구학적 경향이 있다 것에 기반을 두고 노인연령을 나누었다. 그는 삶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통계학적 규칙성이 사회에서 공식적인 연령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이때 연령은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제약이 되기도 한다.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중산층의 출현과 정규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교제도 등은 삶의 기간(period of life)을 고착화 시키는 요소로 보았고, 따라서 삶의 주기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지난 20년(1998-2018)간 남녀 모두 4.4세 증가하였고, 기대수명의 경우는 지난 20년간 남자 9.0세, 여자 7.0세 증가하였다. 반면 은퇴연령은 남자 3.5세 여자 4.5세 증가하였다. 이를 <그림1>과 <그림2>, <그림3>에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노인연령은 통계학적으로 약 8세 가량 상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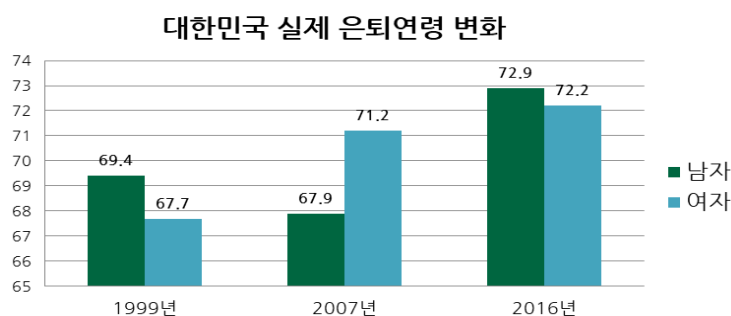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

<그림 1> 평균초혼연령 변화 (1998-2018)



자료: 통계청 생명표 1997, 2007, 2017

<그림 2> 기대수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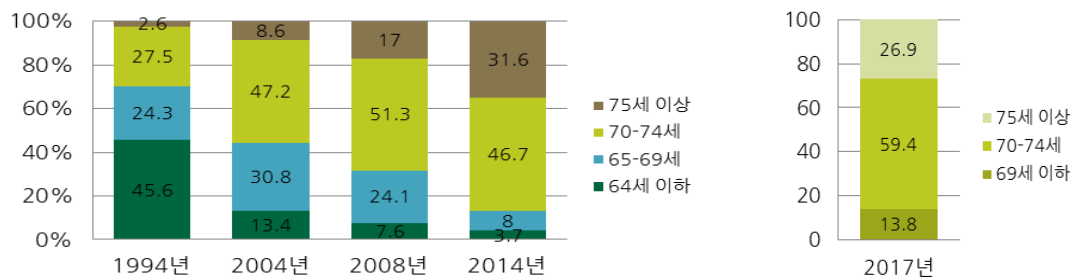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2017 조사자료). Age of withdrawal from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Scherer, 2002)

<그림 3> 실제 은퇴연령

2) 적정연령규범

적정연령규범은 생애사의 전환에 있어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이 있음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 결혼적령기라면 여성은 26세, 남성은 30세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30세, 남성 34세로 변화였다. 노인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연령의 경우도 70세 이상이 86.3%이나 다른 세대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6세로 20대는 67.7세, 30-40대는 68.6세, 50대는 69.7세(노인실태조사, 201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참조)



자료: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2008, 2014, 2017년)

〈그림 4〉 노인(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마찬가지로 <표1>은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태도,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태도, 외모 가꾸는 것에 대한 태도 등 연령규범과 관련하여 응답한 자료이다.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학습이나 일, 외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범에 따르면 노인의 적정연령은 70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연령규범 관련조사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보이지 않음	계 (명)
재혼에 대한 태도	2.9	23.3	11.6	44.2	18.1	100 (10,073)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9.1	59.7	15.2	15.3	1.8	100 (10,073)
학습에 대한 태도	10.8	63.8	16.1	8.4	0.9	100 (10,073)
외모 가꾸에 대한 태도	8.3	57.0	17.3	15.0	2.5	100 (10,073)

자료: 노인실태조사 2017

3)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은 어떤 행위나 역할을 관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통제기능에 초점을 둔 연령규범을 말한다. 노인이 되면 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를 보상한다. <표2>를 보면 만60세 이상의 경우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2> 노인연령별 사회보장제도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
만65세 이상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다수) - 농지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노인임플란트 건강보험 - 노인외래정액제(70세 이상으로 상향 예정. 2019.4.10. 발표)	-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 서비스 - 양로시설 요양시설 입소 - 경로우대제 - 경로당 이용 - 노부모 부양 주택특별공급-노부모 기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노인복지법) - 지하철 무임승차(노인복지법) -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판결(2019.2.21)
만60세 이상	- 국민연금(57-60년생기준 62세) - 노인일자리(취,창업) - 주택연금(60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치매검진 -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용 - 노인복지주택 입소 - 유주택자지만 같이 사는 자녀 청약 때 무주택자 간주

한편 <표3>에서는 연금수령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연령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 은퇴나이는 60세이며, 연금 수령나이는 62세이지만,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은퇴연령을 현재 65세에서 2023년 67세로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올려 은퇴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67-68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보면 노인연령은 65세 보다는 높아야 하겠지만, 실제 몇 세를 노인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표 3> 세계 각국의 정년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

	정년연령	정년조정 연령	목표연도	수정 전 연금수령나이	수정 후 연금수령나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소득 대체율
한국	60	?	?	60	61-65	2013	2033	39.3
일본	65	70	법개정 추진	65	70			34.6
독일	65.5	67	2029					38.2
프랑스	61.3-66.3	62-67	2023					60.5
호주	65	67	2023	65	67	2017	2023	
캐나다	65			65	67	2023	2029	41.0
덴마크	65			65	68	2022	2030	86.4
스웨덴	65.3	67	2027	65				55.8
미국	없음	없음	없음	66	67		2022	38.3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이데일리 2019.3.11

2. Orimo et al. (2006)의 노인연령기준

Orimo et al. (2006)은 노인을 연령보다 건강상태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1992-2002)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신체적 활동은 대략 남자는 7.5년, 여자는 10년 젊어졌다. 일본에서도 고령자의 노화에 따른 걸음속도와 힘으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변화가 5-10년 지연되는 회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젊은 층에서 정신건강이 잘 유지되며, 대다수가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신체기능도 향상되었는데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도 70세에서 2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와 <표 6>에서 보면 ADL & IADL 기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근거에 의한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을 정의하는 경우는 현재 노인대상자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신체적 나이가 비교적 건강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상향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연령별 기능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노인의 연령을 70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심리학적으로도 연령코호트 비교에 의하면 최근의 70대는 50~60대에 필적하는 항목을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적 기능에서 70대의 결정성지능(언어분석, 단어력, 어학능력 등)은 10년 전의 60대와, 유동성지능(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지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 등)은 10년 전의 50대와 유사한 정도의 득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춘남, 2016).

<표 4>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연령분포

(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65세 미만	0.9	0.8	2.0	1.5	0.1	5.0
67-69세	0.7	0.8	2.2	2.1	0.2	6.0
70-74세	1.1	1.6	4.3	4.3	0.6	12.0
75-79세	1.6	2.9	7.1	7.7	1.3	21.0
80-84세	1.7	3.5	8.9	9.6	1.6	25.0
85세 이상	2.1	5.1	11.9	10.6	1.2	31.0
합계	8.1	14.7	36.4	35.8	5.0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7월

〈표5〉 65세 이상 노인 ADL 항목분포

(단위: %)

항목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1994	2004	2014	2017	1994	2004	2014	2017	1994	2004	2014	2017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87.7	96.3	97.4	96.8	9.7	2.2	2.1	2.5	2.4	1.5	0.5	0.7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97.6	96.6	96.9	-	1.1	2.7	2.3	-	1.3	0.7	0.8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76.5	93.5	94.2	93.1	18.4	3.3	4.4	5.4	5	3.2	1.4	1.5
차려놓은 음식먹기	92.8	98.1	99.1	98.5	6.1	1.0	0.7	1.1	1.2	0.9	0.3	0.5
누웠다 일어나 방법으로 나가기	-	97.8	98.7	98.8	-	1.0	0.8	0.7	-	1.2	0.5	0.5
화장실 출입, 대소변 후 닦고 옷입기	86.4	97.5	98.2	98.0	11.6	1.1	1.2	1.3	2	1.4	0.6	0.7
대소변 조절하기	-	96.9	97.8	96.5	-	1.9	1.8	2.8	-	1.3	0.4	0.7
앉기	83.9	98.5	-	-	14.7	0.7	-	-	1.5	0.8	-	-
외출하기	67.7	-	-	-	26.2	-	-	-	6.2	-	-	-

자료: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2014, 2017

전체응답자 수: 1994년 2,057명, 2004년 3,278명, 2014년 10,451명, 2017년 10,299명

〈표 6〉65세 이상 노인 IADL 항목분포

(단위: %)

항목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2004	2014	2017	2004	2014	2017	2004	2014	2017
몸단장 (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95.6	95.6	95.2	2.6	3.6	4.1	1.7	0.8	0.7
집안일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	91.0	90.5	84.1	5.1	7.1	13.5	3.9	2.4	2.4
식사준비 (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90.3	91.0	86.5	5.1	6.7	10.9	4.6	2.2	2.4
빨래 (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90.6	92.0	86.5	4.7	5.7	10.9	4.7	2.3	2.6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95.7	97.3	96.5	2.3	1.9	2.7	2.0	0.7	0.8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85.1	88.6	90.0	11.1	9.0	5.0	3.8	2.5	5.0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92.5	95.1	94.4	3.8	3.4	5.0	3.7	1.5	0.6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2.3	94.6	94.4	4.8	4.8	4.6	2.9	0.6	0.9
전화 걸고 받기	86.6	92.6	86.3	10.5	6.8	12.8	2.9	0.6	0.8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86.2	91.0	85.3	9.9	8.4	14.2	3.9	0.6	0.6

자료: 노인실태조사 2004, 2014, 2017

전체응답자 수: 2004년 3,278명, 2014년 10,451명, 2017년 10,299명

그러나 이러한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Orimo et al. (2006)의 이론은 건강 외에도 노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Bytheway, 2005). 즉 은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연령이라 할 때 건강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3. Clark-Kazak (2008)의 노인연령기준

Clark-Kazak(2008)는 앞서 제시된 연대기적 연령은 성인기 사회적 구성주의를 간과한 정의라고 지적하였고, 또한 건강상태에 의해 제시된 연령, 즉 신체적 발달의 생리학적 사실들 역시 사회적-정치적 함의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노인을 규정할 때 ‘사회적 연령(Social Age)’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사회적 연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연령의 본질로 시간,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사회적 연령의 작업적 정의는 연대기적 연령을 보충하여 노인이라는 정의를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연령은 생물학적 삶의 사건과 사회적 구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gender’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에 주목함에 반해 ‘sex’는 생물학적인 부분에 주목할 것이고, 연대기적 연령에 의한 구분은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로 볼 때 사회적 연령은 태아, 아동, 젊은이, 성인, 노인, 그리고 세대 내와 세대 간 관계에 관련된 신체적 발달과 역할에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으로 서로 다른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늙는다는 것에 의미를 주는 문화적 과정과 실제에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Bytheway(2005)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노인이 되는 지, 소녀가 어떻게 여성이 되는 지를 생물학적 요소로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즉 사회적인 맥락과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은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노동의 분화는 지역사회에서 파워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또 다른 기회와 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연령 역시 연대기적 연령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사회구성주의가 갖는 의미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각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분명하게 경계짓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4. Sanderson & Scherbov (2008)의 노인연령기준

Sanderson & Scherbov (2008)는 Fuche(1994)가 구분한 명목적 나이(연대기적 나이)와 실제 연령(기대여명에 부합하는 연령 또는 사망률의 변화)에 주목하고, 생일을 기반으로 한 연대기적 연령과는 달리 기대연령(Prospective age), 즉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생일의 숫자에 기반한 연령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아있는 수명과 같은 개념으로 2002년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지표로 선택되었던 바 있다. 노인의 남은 기대여명 증가는 연금과 은퇴계획을 디자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된 연령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기대여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의미있다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1975년 Norman Ryd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그는 남은 기대여명이 10년 이하로 남았을 때 노인

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Sanderson & Scherbov(2008)는 남은 기대여명이 15년 이하 일 때 노인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적이 될 때를 노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래 <그림 5>에서 기대수명으로 계산한 나이에 따르면 1952년 30세인 여성은 2005년 40세인 여성과 기대수명이 같게 된다. 즉 두 집단 모두 남은 삶의 기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기대여명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40세는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30세가 된다. 즉 이 여성의 기대연령(prospective age)이 30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65세는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50세(기대연령)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남은 기대수명이 15년 혹은 그 이하일 때 노년기가 시작된다.

1952	3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44.7 years
2005	4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44.7 years

<그림 5> 기대여명

아래 <표 7>의 기대여명 표에서 살펴보면 1970년에는 60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이 15.9년이었으나 2013년과 2017년에는 70세와 약 72세에서 유사한 기대여명이 나타난다. 따라서 2017년의 70세는 1960년대의 60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기대여명이 15년 이하로 나타난 72-73세가 노인의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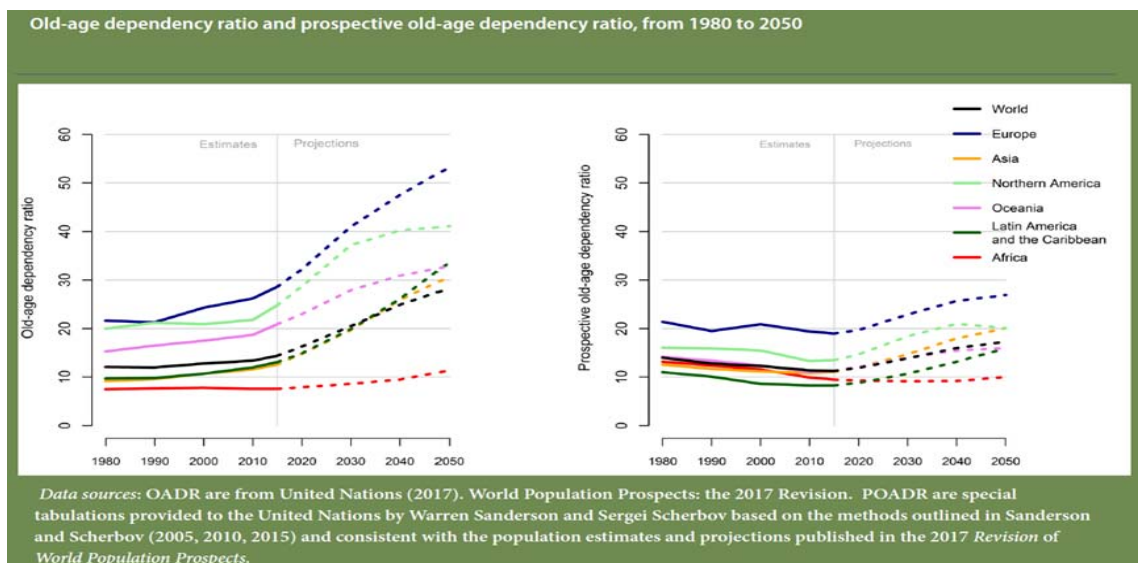
(단위: 년)

연령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이상
1970년	62.3	56.5	47.6	39.2	30.5	22.6	15.9	12.9	10.4	7.9	5.9	4.4	3.3	2.5	1.9
1975년	64.2	58.0	48.8	40.0	31.3	23.2	16.2	13.2	10.5	8.1	6.1	4.6	3.5	2.6	1.9
1980년	66.1	59.3	50.0	40.9	32.0	23.8	16.6	13.5	10.7	8.3	6.4	4.9	3.7	2.7	2.0
1985년	68.9	61.0	51.5	42.2	33.2	24.9	17.3	14.0	11.1	8.6	6.6	5.1	3.8	2.8	2.1
1990년	71.7	63.1	53.4	44.0	34.9	26.3	18.4	14.9	11.7	9.0	6.8	5.1	3.8	2.8	2.0
1995년	73.8	64.8	55.1	45.6	36.3	27.4	19.4	15.7	12.4	9.5	7.2	5.4	4.0	2.9	2.1
2000년	76.0	66.7	56.9	47.2	37.7	28.7	20.3	16.4	12.9	9.8	7.3	5.3	3.8	2.8	2.0
2005년	78.2	68.7	58.9	49.2	39.6	30.4	21.7	17.7	13.9	10.6	7.8	5.7	4.0	2.9	2.1
2010년	80.2	70.6	60.7	51.0	41.4	32.1	23.3	19.1	15.2	11.6	8.6	6.2	4.4	3.1	2.3
2011년	80.6	71.0	61.1	51.4	41.8	32.4	23.6	19.4	15.4	11.8	8.6	6.2	4.3	3.0	2.2
2012년	80.9	71.2	61.3	51.6	41.9	32.6	23.7	19.5	15.4	11.8	8.7	6.2	4.3	3.0	2.2
2013년	81.4	71.7	61.8	52.0	42.4	33.1	24.2	19.9	15.8	12.1	9.0	6.4	4.5	3.2	2.3
2014년	81.8	72.1	62.2	52.5	42.8	33.4	24.5	20.2	16.1	12.4	9.1	6.6	4.6	3.3	2.3
2015년	82.1	72.4	62.5	52.7	43.0	33.6	24.6	20.3	16.2	12.4	9.2	6.5	4.6	3.2	2.3
2016년	82.4	72.7	62.8	53.0	43.3	33.9	24.9	20.6	16.4	12.6	9.3	6.6	4.6	3.2	2.3
2017년	82.7	73.0	63.1	53.3	43.6	34.2	25.1	20.8	16.6	12.7	9.3	6.6	4.6	3.1	2.2

자료: 통계청 생명표.

Sanderson & Scherbov(2008)는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3개의 새로운 인구고령화척도를 만들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에 대한 비교파트(counterparts), 고령인구부양비율(OADR, the old-age dependency ratio), 미디안 에이지(the median age) 등이다. Sanderson & Scherbov(2008)는 연령구조의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를 단순히

20-64세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를 반영하는 고령인구부양비율(OADR)이 아니라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으로 남은 연령그룹의 사람들의 수를 기대여명이 15년 이상인 연령그룹에서 20세 이상인 사람들로 나눈 값인 POADR(prospective old age dependency ratio)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POADR은 지난 시간을 의미하는 연령이 아닌 남아있는 여명을 고려함으로써, 기대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의존의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POADR에 따르면 전통적인 노인부양비율에 따른 예측에 비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의존성(부양)의 증가세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Sanderson, Scherbov, & Gerland, 2017). 그 예로 유럽에서는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OADR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POADR은 그 기간 동안 감소하여 노년층의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였다(<그림6> 참조). POADR 또한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화 관련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OADR에 비하여 그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UN, 2017).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비율로 보면 이들은 전체 인구 중 15.3%를 나타낸 반면 남은 기대여명으로 살펴봤을 때는 15년 또는 그 이하를 나타낸 비율은 11.7%로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여명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지만,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다. 즉 기대연령을 사용하는 것은 인구집단 중심의 고령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건강과 기대수명에 있어서의 개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OADR과 POADR의 비교

그러나, 이 이론의 단점은 실제로 기대여명이 15년 이하로 남은 노인들이 어떻게 의존적인지에 대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작다는 것이며, 또한 나라마다 남아있는 기대여명이 달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Ⅲ. 노인 연령 상향시의 쟁점들

1.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드는가?

국가 입장에서 노인연령상향시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수가 줄어들면 정부재정부담 등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에게 70%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9년 10조원, 2022년에는 20조원에 달한다. 이것을 노인연령을 상향하여 70세로 높이면 연간 최대 3조원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이 전체 진료비의 40%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노인연령의 상향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기대효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대 65세 인구는 3.9%였으나 2018년 14%가 넘어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현재 592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기준을 70세로 늘릴 경우 적자 폭은 줄어들 수 있다.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속도를 늦출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인구가 부족하고 2015년에서 2050년까지 27.5% 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1명에 대한 부양의 경우 2019년에는 근로자 5.5명이, 2030년에는 근로자 2.6명이, 2050년에는 근로자 1.4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사회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조선일보, 2018.3.13.). 그러나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2040년 기준 노인인구는 8.8%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8.4% 포인트(424만명)로 증가하여, 전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만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20.3% 낮아질 수 있다(중앙일보, 2019, 1. 24; 이데일리, 2019. 3. 11.).

3. 인권의 측면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현재 노인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5%에 불과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5명중 1명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될 경우 이러한 노인차별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노인이라는 낙인 연령이 높아지므로 노인차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노인의 역할과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어 노인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또한 일을 통해 수입도 늘 수 있고, 건강을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물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노인의 고립을 막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노인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을 사회의 지지자로 간주, 활력 있는 초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Ouchi 외, 2017).

4.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할 것인가?

현재도 실제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의 기간 차이로 인해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데 노인연령이 상향될 경우 15년 소득 공백의 문제로 소득 크레바스 경험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만60세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2세부터 65세(2033년)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2-5년의 공백이 있다. 그러나 실질 퇴직시점은 이보다 빨라 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49.1세이다. 남성의 경우는 2006년 52.4세에서 2018년 51.4세로 여성의 경우는 48.3세에서 47.1세로 빨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제 퇴직이후 소득 공백은 15년 이상일 수 있어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07년 44.6%였던 노인빈곤율은 지속 상승해 2016년에는 46.5%까지 올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기준 연령 상향은 은퇴와 연금개시연령을 모두 늘려 노인빈곤 시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회보장 수급연령을 올릴 경우 수급자의 2/3가 재정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Zissimopoulos et al., 2017).

5. 노인빈곤문제를 가중시킬 것인가?

현재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심각하여 OECD국가 중 1위를 수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노인연령을 높이면 현재 은퇴연령과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격차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기복지재단(2018)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 각각 10.2%, 8.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용하(2017)는 단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승시켜 2033년 이후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한다면 노인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가 되면 연금수급율이 60%로 이상으로 예상되고, 일자리가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언급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더 늘릴 수 있어 부족한 연금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시 노인빈곤율은 변화가 없으나 고용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issimopoulos et al., 2017), 일을 계속하여 개인의 저축을 늘리고, 전반적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Zissimopoulos et al., 2017).

6.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1) 노인연령기준 상향으로 세대갈등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노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의 기회, 액수 등에서 불평 등을 야기한다

는 면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청년세대는 부모보다 연금을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보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기회가 순연되어 이러한 논쟁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사회보장 비용으로 인한 짐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선 갈등의 여지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

2)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은퇴연령이 늦어지면서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유럽에서도 세대갈등은 일자리를 놓고 심하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 2018).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노인일자리와 젊은층 일자리는 차이가 있어 갈등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란 시제 9-5의 시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노동시간이 적용되어 일자리 갈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와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IT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과 젊은 세대가 팀을 이루어 일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김문정, 정순돌, 김주현, 2016).

7. 노인운전지속기간 늘려 사고 발생율을 높일 것인가?

노인운전자의 연령고령화로 사고 발생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도 노인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선진국은 노인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추세에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적성검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하고 있지만, 노인연령기준 상향시 노인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운전하면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IV. 노인 연령 상향시의 정책과제

1. 이론상 적합한 노인연령의 기준을 선택해야 함, 이를 위해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이 기본이 되어야 함

본 고에서 검토된 여러 가지 연령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반면,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 Settersten(2003)이 제시한 연령기준에 의하면, 통계학적으로 결혼, 기대수명, 은퇴연령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시된 노인의 연령 역시 70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지

만, 사회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상의 법적 연령기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rimo 등(2006)이 제시한 연령기준은 신체적 건강에 의한 것으로 건강상태의 개선과 길어진 평균수명 등으로 인해 과거에 의미했던 65세가 2019년 오늘에도 65세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는데, 특히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판정자 비율이 70세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연령상향의 분위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Clark-Kazak(2008)은 연대기적 연령이 문화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상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사회적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연령의 사회적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Neugarten & Neugarten, 1987). 즉 생애주기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연령집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연령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고려되었던 것들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실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는 특성이 애매하고, 청소년과 성인은 결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경향을 본다면 Sanderson & Scherbov(2005)가 제시한 논의가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대연령(prospective age) 개념이 개별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해집단이 갖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 세대 간 이해와 존중,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두 세대가 상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노인연령기준상향전 사회안전망이 먼저 리모델링되어야 함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이 아니다. 노인연령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상향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는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연령기준 상향 전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 보고 인구 연령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노인빈곤의 예방하기 위해 연금제정을 예측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의 설계는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

하다. 정부는 당장 2019년 6월까지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검토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연금 등 공적 지원 사회시스템을 연령기준 상승과 맞추어 개선

단순히 노인연령만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용하, 2017)에서는 2030년은 되어야 노인인구와 연금재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은퇴와 연금수급시기를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은퇴연령을 늘리면서 연금지급시기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시기와 은퇴연령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연령은 정년연장 등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은퇴 후 소득의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반 조건을 고려해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년퇴직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시스템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제도 역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KDI, 2019). 2050년 15-64세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77.6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평균보다 20명 가량 높은 수치다. 향후 30년 동안 현재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G7처럼 15%대로 떨어지면 2031-2040년 성장률은 1%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9.2%(2017년)에서 G7수준인 80-9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nderson & Scherbov (2005)가 제시한 기대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3) 정부의 부처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함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여러 정부의 부처들은 인구추계를 활용해 여러 제도들에 대한 전망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제 정책부서들은 인구로 인해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동아일보 2019.4.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

기 재정 전망과 기초연금지급, 지역사회통합 돌봄계획 등에 대한 계획,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행정안전부는 중기인력운영 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부서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범부처간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함

1) 고령자 적합직종 등 연구 및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필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하며, 중장년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재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변형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사업쪽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년층의 경우 주 52시간과 같이 정해진 노동시간보다는 탄력적인 근무를 하는 등 유연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나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일자리 배분에 대한 재고려 필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 배분에 대한 재고려 또한 중요하다.(동아일보2019.4.16)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34억 원 규모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은 만 39세 미만에 1점 가산점을 주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연령별로 지원액이 다르다(최대 지원 금액인 만39세 미만은 2000만원, 만40세 이상은 1000만원). 청년전용자금은 만39세 미만 창업가에게 연 2.0%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35세 미만 청년사업자는 수도권에서 법인세 50%, 그 외 지역에서 법인세 100%를 감면해 준다. 노스웨스턴 켈로그 경영대학원 발표 연구에 따르면 성장률 상위 0.1%에 드는 기업자들의 창업당시 평균 연령은 45세 였다고 한다. 창업지원에 나이제한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지원기준을 나이가 아닌 성공가능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

신중년 재취업 등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50+센터나 캠퍼스 등을 통해 인생교육, 창업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해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최근 부산대와 동의대, 동아대, 신라대 등이 생애재설계대학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애재설계 대학은 평생교육 차원을 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에 학사편입을 통해 새로운 학사를 취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V. 결론

연령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속성 중 하나일 뿐이다. 연령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Westerhof & Tulle, 2007).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건강의 증진으로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개념과 연령은 변해야 한다. 노인연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따라서 65세, 70세 등의 새로운 노인연령기준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사회구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의 구조를 고려하여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재구조화는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연령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연령통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Riley & Riley, 2000; 정경희, 2004; 정순돌, 2015). 따라서 노인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대 간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기복지재단 (2018).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
- 김경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553-582
- 김동섭 (2018).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조선일보 3월 13일자
- 김춘남 (2016). 이제 더 이상,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월간 공공정책, 125, 19-22
- 이지현 (2019). 60대에도 우린 아직 청년...출퇴근 만으로 감사. 이데일리, 3월 11일
- 조건희 (2019). 인구 줄어 손볼 정책 뭘지도 모르는 부처들. 동아일보, 4월 17일
- 정현수 (2016). 경로당 막내가 70세?... '노인' 연령 올린다. 머니투데이. 1월 18일
- 정경희 (2011).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6-27
- 정순돌 (2015). 우리나라의 노인차별 현황과 대책.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4
- 정순돌(2016). 노인연령,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11차 인구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자료집 pp.3-45.
- 정순돌 외 (2016). 연령통합: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 공동체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 한국개발연구원(2019).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1994, 2004, 2008, 2014, 2017)
- Atchley, R. C. (1987). Aging: Continuity and change.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ytheway, B. (2005). Ageism and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61-374
- Clark-Kazak, C. R. (2009). Towards a working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a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8), 1307-1324
- Denton, F.T, & Feaver, C., & Spencer, B.G. (1996). The future population of Canada and its age distribution, independence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older population. Research Papers 3, McMaster University.
- Gilleard, C. & Higgs, P. (2000). Cultures of ageing: Self, citizen, and the body. Harlow, Pearson Education.
- Lutz, W., Sanderson, W., & Scherbov, S. (2008). The coming acceleration of global population ageing. *Letters. Nature*, 451(7), 716-719
- Neugarten, B.L., & Neugarten, D.A. (1987). The changing meanings of age. *Psychology Today*, 29-33.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 Orimo, H., Ito, H., Suzuki, T., Araki, A., Hosoi, T., & Sawabe, M. (2006). Reviewing the definition of “elderly”.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6(3), 149-158
- Ouchi, Y., Rakugi, H., Arai, H., Akishita, M., Ito, H., Toba, K., & Kai, I. (2017). Redefining the elderly as aged 75 years and older: proposal from the Joint Committee of Japan.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7(7), 1045-1047.
- Scherer, P. (2002). Age of withdrawal from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 Sanderson, W.C. & Scherbov, S. (2005). Average remaining lifetimes can increase as human populations age. *Nature*, 435, 811-813.
- Sanderson, W.C. & Scherbov, S. (2008). Rethinking age and aging.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Settersten, R. A.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81-98. Boston, MA
-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Ageing 2017 Highlights
- Westerhof, G. J., & Tulle, E. (2007). Meanings of ageing and old age: Discursive contexts, social attitudes and personal identities. *Ageing In Society*, 235-254
- WHO (2016). Definition of an older or elderly person: Proposed Working Definition of an Older Person in Africa for the MDS Project. URL: <http://www.who.int/healthinfo/survey/ageingdefnolder/en/index.html> [accessed 2012-11-03][WebCite Cache].

토 론 문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특성화 연구소) 소장
KKAA(한국/재미 한인 노년학자 학술회) 의장
한국노년학회 이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자문 위원회 위원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노인연령기준 상향은 몇 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노인연령기준 상향을 반대하던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2016년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였으며 2019년 초 보건복지부 장관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를 제시하였으나 다른 쟁점들에 묻혀버려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선진복지연구회에서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발제문에 연령기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의 필요성,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를 어르신들의 입장, 건강혜택 등을 통해 잘 제시하고있다. 또한 연령기준상향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영역의 장.단점에 대한 고려로 합리적 방법으로 노인연령기준상향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연령상향 기준을 토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사료된다.

여러 선행연구나 이론가를 중심으로 노인연령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보통 13세 어리게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78세나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보다 기대수명도 높고 신체건강도 좋다. 노인들의 기대수명 증가 뿐 아니라 예전의 노인과 다른 신체, 인지, 기능을 갖고 있다. 본인은 노인이라고 생각안하는데 주위에서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짓는다는 것도 맞지않는다고 볼 수 있다.

Kaufman과 Elder(2002)는 연령정체성(Age Identity)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령정체성은 첫째 “개인이 느끼는 연령”인 주관적인 연령, 둘째,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는 연령”으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연령이 되겠으며 셋째, “자신이 원하는 연령”으로 현재 자신이 몇 살이면 좋겠는지의 주관적 연령이다. 넷째, “수명연령”으로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는가이며 다섯째,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노후연령인지”(perceived old age)로 보통 남자나 여자가 몇 살이 되면 노후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이처럼 연령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본 토론문에서는 발제문에 대한 동의 외에 이견이나 추가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동력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노인부양 문제도 산업사회 시작 이후 청소년의 노동력활용, 여성의 노동력활용으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노인부양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4차 산업의 경우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도 많은 영역에서의 보조역할이 가능하다.

발제자가 제시한 인구구조를 봐도(1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360만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460만 명 늘어난다)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 강제은퇴규정은 없어져야할 것이며 이것은 노인연령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 :

여러 학자들의 연령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Orimo(2006)의 건강에 의한 것 즉 신체적인 것, Bytheway(2005)의 사회적, 개인적 경험, 심리적 지적 능력, Clark-Kozak(2008)의 사회적 연령에 대한 소개, 이외에 추가하고 싶은 한 연구자는 Neugarten(1975)으로 전기, 후기노인에 대한 구분은 연령구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초년생인 1955년 생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에 언론을 통하여(조선일보, 2013) 신중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하고 저항도 많은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은퇴 등 경제적인 것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노인의 기준은 신체, 심리, 사회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혜택 등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연구자의 Sanderson과 Scherbov(2008)의 기대여명의 증가로 의존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노인의 연령개념에 대한 설명은 고무적이다. 표5의 65세 이상 ADL과 IADL의 항목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약 챙겨먹기) 중 완전 자립은 2017년이 2014년 보다 줄어들어 적절한 예인지는 의문이다.

○ 노인 연령 상향 시의 쟁점들 :

연령상향기준에 대한 국가 입장의 장단점, 노인 개인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처럼 정책결정에는 거시, 미시의 장단점 등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토론자는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입장(장점):

첫 번째, 건강보험치료비가 65세 이상이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 사용으로 노인연령이 높아지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노인연령이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이 되어 연령이 증가해서 병원을 자주 찾는다면 이것은 정부의 재정부담과는 상관없이 연령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의해 노인들의 진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노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노인부양비가 낮아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다.

셋째, 지하철 무임승차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연령상향과 그다지 관계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5월8일 당시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요금을 50% 할인해준 것으로부터 시작 1984년부터는 제도를 확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 할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다.

현재의 노인과 당시의 노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 등도 이 부분에서는 고려되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노인인구가 2배 늘어 지하철 무임승차가 늘었지만 이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발제자가 제시하였듯이 해외의 경우 연령도 60~70세로 다양, 대상이나 적용시간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령이나 대상 등을 저소득층으로 하던지 다양하게 개선 가능 할 것이다. 출퇴근시간은 예를 들어 피하고, 주중에만 우대, 저소득층 할인 등등

네 번째, 인권차원의 노인차별 줄일수 있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입장(단점):

첫 번째, 노인빈곤문제 가중: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시기 격차로 인한 빈곤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도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시기는 62세로 격차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서구와 같이 은퇴연령을 서서히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도 2013년에 정년이 65세로 됨-미국 1978년에 만 70세, 1986년에 정년제 폐지, 영국 2011년에 제도 폐지. 독일은 현재 65세며 2029년에 67세로 점증)

한국의 연금수령시기는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증가하여 현재는 62세)

둘째, 고령자의 운전지속, 사고발생의 지속적 상승우려에 대한 것도 연령과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노인일자리와 노인들의 직장은 다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노인이나 청년의 취업률은 다 높아지며 노인이 선호하는 직종과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은 겹치지 않는다.

노인입장(장점)

첫째, 노인차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노인차별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둘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당연히 노인의 직장생활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자리 사업은 고유명사로 노인의 직장과는 구분된다. 은퇴연령은 현재 60세로 은퇴연령의 추가적 증가는 노인연령기준과 별개문제지만 직장은 관계가 있으므로 점차 은퇴연령은 늘려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적으로 젊게 살 수 있다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노인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Kaufman과 Elder(2002)의 연령정체성이 제시하듯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나이도 중요한 연령이다.

넷째, 노후준비를 보충할 시간이 생김

은퇴연령이 늘어나니까 노후준비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노인연령기준이 늘어나고 은퇴연령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대수명이 그렇게 늘어날 줄 몰라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노인의 입장(단점):

첫째,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을 다 같이 늘려나가야하는데 동의한다. 현재도 은퇴연령, 노인연령, 연금개시연령은 다 다르다.

둘째,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더 기다려야함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차등해서 선별적으로 조정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노인연령상향으로 인한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차등하여 개별적으로 상향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연령기준도 은퇴연령, 노인연령,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다 다르듯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순위로 연령변경이 가능하며 점차적으로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세대의 입장

***장점:** “②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고 준비 ③ 부양부담 줄어듦”은 동의하나 “① 세대간 정보나누고, 상생기회 마련”은 불분명하다.

*단점: 첫째, “노년층의 늦은 은퇴로 양질의 일자리와 청소년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겹치지 않는다.

둘째, “노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기회, 액수 등의 불평등 야기.

사회보장의 기회도 장, 단점이 다 있고 혜택 못받는 노인도 많다.

국민연금보험이 시작된 것이 1988년이므로 그때 해당이 되지 않은 노인들은 연금혜택을 못받으므로 어떤 정책시행 시 혜택 못받는 연령층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의 노인빈곤이 높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수명이 길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현재의 노인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의 운전 급증”

고령자 연령증가와 고령자 운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금도 고령자 운전자 사고율은 높지만 노인은 스스로 운전하기 힘들 경우 운전대를 놓는다고 생각된다.

특히 노인들은 운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초보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 요 등과 같이 고령자를 표시하는 운전 표시판도 중요하다. 또한 젊은 운전자들에게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특히 반응속도가 느린 것들을 설명하여 노인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안에 관하여:

첫째 “가장 합리적인 방법 채택 필요”는 문제해결방법의 하나로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안 중 선택할 때의 방법이기도 하다.

“Setterstein(2003)의 연령기준을 법적 연령기준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함” 이처럼 노인연령기준을 높이지 않는 것은 노인의 건강,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따르지 못하므로 법적 연령기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발제자는 여러 학자들의 제안 중 Sanderson과 Scherbov(2005)가 제시한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한다. 본 토론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여 65세에서 75세로의 급격한 상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클 수도 있으므로 70세 정도로 높이고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등의 수급 연령도 서서히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체계이론에

의하면 체계는 항상성을 갖고있어 변화가 생길 때 변화에 저항하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책이 시행될 때 적응이 되며 사회적, 신체적 필요에 부합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된다.

둘째, 사회적 합의 필요, 세대 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함

노인연령상향 시 각 세대 간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대해 문제제기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처음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번 씩 제시,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 그러나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이슈화가 되지 못함.

그 외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이것과 더불어 복지예산이 높아지는 것 등으로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2019년 1월 매일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55.9%, 반대가 41%. 이런 여론을 통한 홍보, 공청회, 학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의 리모델링 필요

“연령구조의 변화에 맞는 사회적 안전망--> 연금제정에 대한 예측 및 필요한 조치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준비 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해소를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년을 높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고, 연령차별 금지법안을 마련하여 Sanderon & Scherbor가 제시한 기대연령 사용이 맥락상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Sanderson & Scherbor는 75세,

이 학자들의 논리는 맞더라도 이것도 연령상한 후 여러 정책들의 연령상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축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 내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나이가 존재하듯이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나이를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나이가 무의미한 사회(age irrelevant society)인데 racism, sexism과 같이 ageism은 연령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에 대해서 잘 알 때 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므로 국가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예전에 노인들은 cf 등의 모델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 고령친화산업 등을 위해서도 노인들이 cf.모델로 나오고 노인친화적인 송해선생님 같은 분이 모델로 나오는 은행 등을 노인들이 많이 애용한다고 한다. 광고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등장, 치매 등의 노인문제도 등장.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가족의 문제임 등을 인식시킨다면 노인연령상향도 그렇게 거부반응이 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토 론 문

이 상 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1. 들어가며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노인연령 기준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를 놓고 토론을 벌였고 더러는 이 이슈가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복지에 소극적인 보수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됐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는 즉자적으로 반발했다. 그래서 이후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이슈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거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복지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늘 제기되는 이슈는 역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다. 보수진영과 일부 전문가들만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슈는 사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과제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데서 보건복지부라고 예외일 순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정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확대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경제·재정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슈는 정치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라서기가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아주 예민한 이슈이고, 일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무조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별 성과도 없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주요 쟁점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발표자의 발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탈리아 노년학회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일본 노년학회도 65-74세를 준고령자, 75-89세를 고령자, 90세 이상 노인을 초고령자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은퇴와 사회보장의 수급이라는 중요한 요소와 결부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노년학의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이 이슈를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1) 소득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를 통해 얻는다. 하지만 소득 단절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늘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 보장 제도가 바로 공적 노령연금이고, 우리나라에는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이 가입한 특수 직역연금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여기서 소득 보장 제도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한, 노후소득은 노인연령 기준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논의를 별로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루어진 ‘국민연금 대개혁’ 조치로 인해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기 결정했고, 이에 따라 수급연령이 당시 60세에서 2033년이면 65세로 상향된다. 그러므로 공적 노령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 될 일이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은퇴연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은퇴연령은 60세인데 현행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인 62세와 차이가 난다. 앞으로 은퇴연령이 고정된다면 그 간격은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복지국가의 ‘일생에 걸친 보편적 소득 보장’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은퇴연령과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시점을 잘 맞추려고 노력한다. 은퇴연령이 노르웨이는 67세이다. 독일과 일본은 현재 65세인데, 독일은 2027년 67세로 일본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미 정해진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연령 스케줄(2033년까지 65세)에 대응하도록 은퇴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작업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이후의 추가적인 공적 노령연

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논의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노인연령이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바로 노인을 위한 사회수당인 기초연금이다. 2008년 1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였으나 그해 7월부터 수급 연령이 65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작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내년 4월에는 소득하위 40%까지, 그리고 2021년 4월이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을 모두 합하면 15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노후소득 보장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기초연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역시,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지금의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해본다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후빈곤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나는 7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사회수당이므로 70세 이상인 노인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70세 미만의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태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65세부터 69세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연령대에서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초생계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하위소득 계층부터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이다.

기초연금 이슈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도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 이 이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를 한다면 70세로 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65-69세 인구 중에서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교통복지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서비스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서비스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별로 관련성이 없다. 혹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어, 마치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는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과 같은 소득 보장제도와 달리 ‘서비스 필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66세이든 76세이든 의료서비스의 필요가 있으면 의료보장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나이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노인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인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조치를 어느 연령대로 제한할 것인지, 이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 조치는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본다. 결국 이것은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가 OECD 평균인 80% 수준까지 추진됨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을 모든 연령층에서 지금보다 더 낮추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노인 연령대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 게 옳기 때문이다.

사실, 틀니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치는 적용 연령이 70세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적용의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게 옳은 일이다. 틀니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가 주로 후기 노인일 확률이 높겠으나 개인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비교적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틀니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필요하다면 공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옳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사회서비스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필요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3. 나가며

발제 글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2세이던 때 노인의 기준연령이 65세였는데, 지금 평균수명(출생 시점의 기대여명)이 83세에 육박함에도 여전히 노인의 기준연령은 65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인들도 정서적으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논의는 필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옳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보장의 일부 제도적 장치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관련돼 있다. 또, 지차제 차원의 현금성 노인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연령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학술적 차원을 넘어 현실의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67세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거나 “생산가능인구의 상한은 이제 64세가 아니라 69세”라는 말은 사회

적으로 수용되기가 쉽기 않다. 결국 65세가 노인이라는 오랜 인식은 변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65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각종 노인성 변화가 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65세인 기존의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림으로써 65-69세 인구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엄밀하진 않지만 65-69세를 초기 노인, 70-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해서 각각의 노인 인구에 대해 경제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싶다. 대체로 이렇게 되면 일자리, 소득,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노인의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구획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쪼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토 론 문

황 남 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화사회 연구센터/

한국노년학회 편집위원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글로벌 프로젝트 한국 회원

노인연령기준 논의의 프레임 전환 필요

오늘 발제의 토론에 앞서서, 노인연령기준과 관련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초대해주신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관련된 쟁점과 정책과제를 압축적으로 잘 발제해주신 정순돌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시 쟁점을 ‘국가, 노인세대, 비노인세대’로 구분하여 정리해주셔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비노인세대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현재 노인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노인연령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노인세대가 되는 연령층, 오늘 발제에서는 64~7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대한 입장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이들 집단은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느냐, 기여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인연령기준 상향에는 동의하더라도, 사회복지정책 수혜 측면에서는 반대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오늘 발제 배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인연령기준에 관한 논의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인, 노인인구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대수명의 증가, 건강수준의 향상 등으로 현재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며 중장년에 해당되는 연령층이라는데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축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보다는 정책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논의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은 전 생애과정에서 누적된 다양한 경험으로 집단 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며, 현재 노화과정에서도 개개인별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단일한 연령기준 등으로 노인 집단을 정의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정책 대상자를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인구집단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령, 교육수준 향상, 건강수준 향상, 근로능력 및 근로의사 증대 등-에도 관심을 두고, 노인의 특성과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연령기준을 정립하되, 연령 외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보다는, 노화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정책 분야별(소득, 노동, 건강, 돌봄, 여가 등)로 유연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연령기준 상향 이후, 노인복지정책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반영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외(2015)에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연령이 상향조정되었을 때'가 31.8%로 가장 응답률이 높고, 그 다음 '노인 연금수급율이 개선되었을 때' 27.3%,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었을 때' 18.2%, '노인 건강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13.6%,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개선되었을 때' 4.5%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노후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인연령기준, 65세는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를 65세로 규정한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상,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연령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예정대로 다음달, 노인연령기준 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잘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정경희·김경래·오영희·이윤경·황남희·이선희(20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부 록

- ◆ 본 연구회 소개
-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항

<본 연구회 소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 - 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30차>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29차>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 1 :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2 : 정종순 기자 (중앙일보)
- 3 :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28차>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7차>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26차>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차>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4차>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 : 성운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3차>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2차>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21차>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20차>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4 :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 1 :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 2 :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3 :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 2 :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4 :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5 :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2 :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3 :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2 : 구종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3 :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4 :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5 :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 2 :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3 :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4 : 이은하 분과장(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플러스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환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8차>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 3) 곽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운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 강옥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2019년 정책토론회 2차

- 일 시 : 2019년 7월 중 오후 1시~오후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실

2.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일 시 : 2019. 08. 17~18
- 장 소 : 강화도 석모도
- 멘티 청소년 20 명, 멘토 중장년층 20명

3. 창립 10주년 기념 및 2019년 정책토론회 3차

- 일 시 : 2019년 10월 중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협 력 기 관: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법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정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이용 되고 있습니다.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9988234』

수료증 및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